

#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의안 번호	327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4년 8월 27일

발 의 자 : 남진삼 의장

찬 성 자 : 박춘희, 김광성,  
김성기, 심현정,  
이은미, 이창열 의원

## 1. 주 문

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64조 및 「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2조에 따라 중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.

나. 활동기간은 2024년 9월 5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## 2. 제안이유

가.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「공유재산관리계획계획안」을 심사하기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및 「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」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위원 6명으로 구성한다.

## 3. 참고사항 : 관계법령

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64조

나. 「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2조

# 활 동 계 획

## 1. 활동목적

- 심도있는 심사로 최고 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
- 신속한 의사진행

## 2. 심사안건

- 공유재산관리계획안

## 3. 활동기간

- 2024년 9월 5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## 4. 구 성

- 박춘희 의원, 김광성 의원, 김성기 의원, 심현정 의원,  
이은미 의원, 이창열 의원

## 【관계법령】

### □ 지방자치법

제64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
2. 특정한 안건을 심사·처리하는 특별위원회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.

### □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

제2조(설치) ① 평창군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는 「지방자치법」 제64조제2항에 따른 특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의회 본회의(이하 “본회의”라 한다)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② 의회는 예산안 및 결산의 심사를 위하여 의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. 이 경우 예산안 관련 안건(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말한다)의 심사를 포함한다.

③ 의회는 의원윤리 및 징계·자격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.

④ 위원회는 본회의의 승인을 받은 기간 내에 활동할 수 있다. 다만, 해당 위원회에서 심사 등을 한 안건 등이 본회의에서 의결 또는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.